

제348회 정례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11. 8 ~ 12. 13)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8회 정례회

(2017. 11. 8 ~ 12. 13)

제348회 정례회 개회사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한 지가 엇그제 같은 데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한 해를 돌아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인디언 말로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나름 유추해 보니 한 해가 거의 사라졌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충분하고 소중한 달이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심의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의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바라보는 큰 안목으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정리와 내년도 목표설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의 안정과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대표단은 지난 5일간의 일정으로 국제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을 방문하여 전라북도 농산물의 두 지역 유통물량 증대와 청소년들 간의 우호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내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해이자 전라북도 방문의 해인 만큼 다양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 지역 현 지사와 의장께서도 이러한 협력이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동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호적 공감대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36일간의 장기일정입니다.

싸늘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성과 가득한 정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 348 회 정례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11. 2(목)
- 집회 일자 : 2017. 11. 8(수) 14:00
- 집회 사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 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11. 8 ~ 12. 13(36일간, 2017년 : 125일, 총누계 630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3(연누계 : 27, 총 누계 103)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8회 정례회	56	3	10	9	8	10	10	6
2017 년도	188	14	34	30	27	35	29	19
총 누 계	883	61	180	127	137	153	160	65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11.8(수)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신상발언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재완 의원, 장명식 의원, 이도영 의원, 최명철 의원, 박재만 의원 최영규 의원, 이현숙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1.22(수) 11: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주영은 의원, 양성빈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12.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12.13(수)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 의원, 이호근 의원, 강용구 의원, 양성빈 의원, 최인정 의원 양용호 의원, 장명식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13.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18. 전라북도 채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5.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26.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27.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28.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9.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0.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32.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3.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34.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3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 대책 촉구 결의안 38.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39.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40.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41.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향차 증편 촉구 결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 영 위 원 회	11.8(수)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 결정의 건 ○ 제34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9(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11.22(수) 14: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자치 위 원 회	11.9(목)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인권센터,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11.10(금)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외협력국,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11.13(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조정실, 감사관 	
	11.14(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1.15(수)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방본부, 전북연구원 	
	11.16(목)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미진실국 행정사무감사 	
	11.17(금) 1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청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23(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30		- 기획조정실, 감사관	
	11.24(금) 10:00	9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인권센터, 공보관, 공무원교육원	
	11.27(월) 10:00	10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환경복지 위 원 회	11.10(금) 10:00	1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11.13(월) 10:00	2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추진지원단	
	11.14(화) 10:00	3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여성보건국	
	11.15(수) 10:00	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16(목) 10:00	5	○ 미진부서 추가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11.23(목) 10:00	6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환경녹지국 ○ 환경녹지국소관 의안심사	
	11.24(금) 10:00	7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복지여성보건국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11.27(월) 10:00	8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새만금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11.28(화) 10:00	9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및 의결	

농산업경제 위 원 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11.10(금) 10:00	1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1.13(월) 10:00	2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 연구원	
	11.14(화) 10:00	3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축수산물식품국	
	11.15(수) 10:00	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	
	11.16(목) 10:00	5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원 ○ 미진업무 감사 및 현지감사	
	11.23(목) 10:00	6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축수산물식품국	
	11.24(금) 10:00	7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경제산업국	
	11.27(월) 10:00	8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11.9(목) 14:00	1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민안전실	
	11.10(금) 10:00	2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	
	11.13(월) 10:00	3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관광국	
	11.14(화) 10:00	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11.15(수) 10:00	5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문학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16(목) 14:00	6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11.17(금) 10:00	7	○ 미진부서 추가 감사 등	
	11.23(목) 10:00	8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공정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11.24(금) 10:00	9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건설교통국	
	11.27(월) 10:00	10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민안전실 ○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 육 위 원 회	11.9(목) 10:00	1	○ 정책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교육청	
	11.10(금) 10:00	2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라북도교육청	
	11.13(월) 10:00	3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주·군산·부안·김제·완주교육지원청 - 익산·남원·정읍·고창·임실·순창·진안·무주·장수교육지원청	
	11.14(화) 10:00	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 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11.17(금)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미진업무기관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11.21(화)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푸른학교, 전북맹아학교, 황등중학교 	
	11.24(금) 10:0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11.27(월) 10:0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11.28(화) 10:0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11.29(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군산·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 -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2.4(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질의 -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센터, 공보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12.5(화)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경제산업국, - 농축수산물식품국, 농업기술원 	
	12.6(수)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복지여성보건국 - 소방본부, 대외협력국,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1.2.7(목)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질의 - 정책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국 	

	12.8(금)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및 수정예산안 심사 	
	12.11(월) 10:0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8회 (2017. 12.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47	26	8	17	1	0	0	4	0	9	7	1	
	누 계	1265	673	303	364	12	13	1	319	0	49	160	50	
의 회	소계	금회	19	11	7	4	0	0	0	0	0	7	1	
		누계	647	416	259	157	0	13	1	9	0	0	160	48
	의원	금회	18	11	7	4						7		
		누계	596	416	259	157	0	12	0	3	0	0	145	20
	위원회	금회	1											1
		누계	51	0	0	0	0	1	1	6	0	0	15	28
	도지사	금 회	18	13	1	11	1			1		4		
		누 계	467	200	32	160	8	0	0	241	0	25	0	1
교육감	금 회	10	2		2				3		5			
	누 계	151	57	6	47	4	0	0	69	0	24	0	1	

2. 처리현황

○ 총 관

제348회 (2017. 12.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47	46	40	6	0	0	0	0	1	
	누계	1265	1237	1054	151	0	18	0	14	28	
조 례 안	소계	금회	26	25	21	4	0	0	0	0	1
		누계	673	655	519	118	0	3	0	6	26
	의회	금회	11	11	11						
		누계	416	393	320	68	0	0	0	5	22
	도지사	금회	13	12	8	4					1
		누계	200	197	150	44	0	2	0	1	3
	교육감	금회	2	2	2						0
		누계	57	56	49	6	0	1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3	12	11					1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4	4	4						0	
	누계	319	318	293	9	0	11	0	5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9	9	7	2						
	누계	49	49	25	22	0	2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7	7	7						0	
	누계	160	160	156	1	0	2	0	1	0	
기 타 의 안	금회	1	1	1						0	
	누계	50	50	50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39	26			4		9			39	32	7			1	
	누 계	1069	666	13	5	310	0	49	17	3	1041	869	138	18	13	28	
운 영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57	37	13	1	0	0	0	6		51	47	1	1	2	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 회	10	9			1					10	10					
	누 계	207	144	0	0	51	0	0	2	1	204	178	23	3	0	3	
환 경 지 위 원 회	금 회	3	3								4	1	3				
	누 계	150	125	0	4	18	0	0	3	0	145	118	23	2	2	5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 회	2	2								2	1	1				
	누 계	187	89	0	0	95	0	0	3	0	181	154	18	7	2	6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 회	8	8								7	6	1			1	
	누 계	196	118	0	0	74	0	0	4	0	193	156	27	0	3	3	
교 육 위 원 회	금 회	6	3			3					6	6					
	누 계	215	140	0	0	72	0	1	0	1	208	179	22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 회	9						9			9	7	2				
	누 계	51	0	0	0	1	0	48	1	1	51	28	21	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9						8	1	9	9					
	누계	200	1			8		147	44	200	197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47	26			4		9	7	1	47	40	7		1	
	누계	1265	673	13	1	319		49	160	50	1265	1071	152		14	28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48회 (2017. 12.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265	673	303	364	12	13	1	319	0	49	160	50
의 회	소 계	647	416	259	157	0	13	1	9	0	160	48
	의 원	596	416	259	157	0	12	0	3	0	145	20
	위 원 회	51	0	0	0	0	1	1	6	0	15	28
전라북도지사	467	200	32	160	8	0	0	241	0	25	0	1
전라북도교육감	151	57	6	47	4	0	0	69	0	24	0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8회 (2017. 12.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265	1237	1054	151	0	18	0	14	28	
조 례 안	소 계	673	655	519	118	0	3	0	6	26
	의 회	416	393	320	68	0	0	0	5	22
	도 지 사	200	197	150	44	0	2	0	1	3
	교 육 감	57	56	49	6	0	1	0	0	1
규 칙 안	13	12	11					1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319	318	293	9	0	11	0	5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49	49	25	22	0	2	0	0	0	
건 의 결 의 안	160	160	156	1	0	2	0	1	0	
기 타 의 안	50	50	50	0	0	0	0	0	0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 출 자	최인정·이해숙·장명식·송성환·최훈열·양용호·박재완·최영규·이성일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0. 11
	의 결 일 자	2017. 11. 1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1.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1. 2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하여 도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나. 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5조~6조)
- 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사항을 정함(안 7조~11조)
- 라. 빛방사허용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제외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7조~20조)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양성빈·이상현·박재완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11.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광산업 영역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지속적인 확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분야 이해주체 간 공정한 관계와 분배 등, 공정관광을 확산시키고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라.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상현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안 제2조)
- 나. 건립비용 비용부담(안 제5조)
- 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마. 관리 및 활용(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 건축물들을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철거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 관계로 직권철거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시·군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주변환경 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1. 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1. 9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월남전 기간중 파월용사가 3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1만여 명이 부상, 5천여명이 사망하는 등 파월장병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했으나,
-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월남전 파병당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전투근무수당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을 국가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파월장병 및 유가족들이 통탄의 심정으로 늦게나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국회에 계류중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회에 계류중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건의함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1. 2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한 전북체육발전의 기반구축과 다양한 체육진흥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선수 및 체육꿈나무 발굴육성으로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 2조의 2)
- 나.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연임 규정 개선(안 제4조 4항)
- 다. 제척·기피·회피 등 명확한 규정 부재와 개의 및 의결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개정 및 신설(안 제4조)

〈 수정안 신규대조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임 없이 도지사가 냉난방온도 관리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결과 공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규정 삭제(제4장 제22조 ~ 제26조)

전라북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사항 후속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항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

□ 주요내용

-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나. 「지방재정법」 제91조 조항 삭제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변경
-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 후속조치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 도모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투자보조금 지원조항 중 고용인원의 명확화, 도내 기존기업의 기존부지 내 투자시 기준 완화, 3년 미만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신설,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 자구 수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내 기업이 도내 투자 후 보조금 지원 조건인 고용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삽입(안 제7조제1항)
- 나. 도내 기존기업이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 투자 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
- 다.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의 지원 조문 및 기준 신설(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5항제4호)

<수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기존부지내 투자할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② ----- ----- ----- -----40명----- ----- -----,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1. 22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1. 22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라북도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근거 마련(안 제4조)
- 나. 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 사유 마련(안 제5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 마련(안 제6조, 제8조)
- 라.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의결 근거 마련(안 제9조)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7.08.09.)*에 따라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 환원된 사무, 도 및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폐지사무, 근거법규 변경조항 등을 정비
 - (도이양 규칙→조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 (시·군으로 권한이양)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관리,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수요응답형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 협동조합,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근거법규 조항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지방하천, 하천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추가 감면율이 조정 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 지역개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2017년 ⇨ 2020년)
- 나.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7조)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환경보전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환경보전 사업·활동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연장근거 명시 (안 제10조)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가축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소방인력 확충 등 국가시책 이행 및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 구

- 본 청 : 12실·국·본부 55관·과·단·센터 → 12실·국·본부 57관·과·단·센터 (+1과+1단)
- 직 속 : 3원 10서(변동 없음)
- 사업소 : 9사업소(변동 없음)

나. 기능조정

- 인구정책, 분권 등 균형발전 정책 기능강화(안 제6조)
 - 기획관실 내 지역생활권팀을 균형발전팀으로 변경
-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안 제6조)
-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동물방역 전담부서 신설(안 제9조)

다. 정 원

-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63조)
 - 정원의 총수 : 3,812명 → 3,885명 (증 73명)

의안번호 1234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정비

주요내용

-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변경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한완수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나. 사전심의 대상 및 검토기준(안 제7 ~ 제8조)
- 다.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현행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업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3항)
- 나. 수업료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불용결정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조항(제16조)의 내용 정정으로 불용품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을 활성화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
-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 물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나.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다. 물품분류 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 취득단가 상향 (별표 1)
- 라. 물품 정리구분 용어 정의 명확화 (별표 2)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해양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주도의 학생 대상 해양사고 피난, 구조체험 등 종합적인 상시 해상안전 체험 교육시설이 부재한 상황임
- 위도 웨리호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인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상사고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신감과 대처능력이 중요한 바, 실제 해상안전사고를 가상한 사고대처식 안전체험을 위한 체험관 설치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상안전체험관 증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구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3-1	해상안전 체험관	건물	1,078	3,868,546	해상안전 체험관 증축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매입]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만성초등학교는 2014년 36학급 규모로 이전개교 하였으나, 2017학년도 현재 41학급으로 보통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 향후 2020년 통학구내 공동주택(대방디엠씨티-494세대)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를 대비하여 교실 증축이 필요하나 현재 부지에는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임
-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만성초등학교 인접 학교용지를 증축 부지로 매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만성초등학교 교실증축을 위한 토지 매입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취득	전주시 완산구 중동	803	학교용지	14,057	1,460,000	교실 증축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현재 기숙사 3동(연면적 4,463.45㎡, 54실)에 기숙사 실별 기준에 따라 244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
 - ※ 건축년도 : 기숙사 1·2동(1974년), 기숙사 3동(1999년)
-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7학년도 학과개편에 의한 2019학년도에 완성하는 21학급(학생수 420명)으로 변경이 되어도 수용시설이 부족함
 - ※ 정원기준 80%(336명) 수용시 실별기준 부족인원수(실수) : 92명(6인용 16실)
 - 부족인원 산출내역 : 학생수 420명 × 80% - 기숙사 실별기준 244명 = 92명
- 따라서, 교육목표 달성과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특성에 맞는 학생수용을 위해 기숙사 증축이 절실한 실정임

□ 주요내용

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단위 : 천원)

계 획 구분	소 재 지	지 번	용 도	면적(㎡)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군산시 송풍동	762	기숙사	1,890	3,928,004	기숙사 증축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임.

□ 주요내용

- 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건으로
- 소방안전타운 조성 사업
 -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
 -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안건임.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원수업, 온라인 게임 몰입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 프로그램 또한 미흡한 실정
-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함을 규정함 (안 제5조)
- 나.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간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8조 제4항)
- 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 금지(안 제16조의2)
- 다. 육아시간 대상자를 여자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34조)
- 라.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모성권 보장시간으로 변경(안 제23조제14항)
- 마.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신설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적용(안 제23조제17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허남주·송지용·박재완·강용구 이도영·이해숙·정호윤·최영규 최영일·최은희 의원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 18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16년 월정수당에 '17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18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2,826,990원 보다 98,940원(3.5%) 많은 2,925,930원으로 함(별지 제6호 서식)
 - '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 3.5%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박재완·이상현·최영일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는 공공건축물, 도로, 교통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을 계획함에 있어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조례 제정이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및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군 또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사·홍보·교육 등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법정계획인 전라북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종류와 지급방법 등을 규정(안 제13조)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한완수·최은희·박재완 의원 외 13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시·군별 차이로 인해 도내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시·군별로 운영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의 연중무휴 24시간 운행과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규정(안 제10조의3)
-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관내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 요금, 관외의 경우 일반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정하도록 시장·군수에 권고할 것을 규정(안 제10조의4)
- 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5)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제 출 자	최훈열·정호윤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2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 이에, 전라북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 마.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7조)
-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현숙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10. 3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
	의 결 일 자	2017. 11.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북도 도민이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영일 의원 외 17인		제 출 일 자	2017. 11.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1. 8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1. 9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양보호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전국적으로 3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낮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경영자와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고,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수당이 시설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정해진 업무 외에 근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 미비 등에 고통 받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대책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 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촉구한다.
- 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쉼터 및 상담센터 건립, 급여대상 외의 업무 금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감독기관의 감시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3)
	의 결 일 자	(2017. 11. 30)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수정가결)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주요내용

-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전년예산	증 감 액
합 계	3,315,706,507	2,861,846,968	453,859,539
이 전 수 입	3,223,688,460	2,675,698,658	547,989,802
자 체 수 입	31,018,047	31,572,346	△554,299
차 입	0	99,062,089	△99,062,089
기 타	61,000,000	55,513,875	5,486,125

-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전년예산	증 감 액
합 계	3,315,706,507	2,861,846,968	453,859,539
유아및초중등교육	3,065,607,726	2,729,422,594	336,185,132
평생·직업교육	6,620,428	6,920,456	△300,028
교육일반	243,478,353	125,503,918	117,974,43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3)
	의 결 일 자	(2017. 11. 30)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190,818,552	3,180,054,169	10,764,383
이 전 수 입	2,959,011,752	2,950,758,132	8,253,620
자 체 수 입	36,172,838	33,662,075	2,510,763
차 입	57,331,608	57,331,608	0
기 타	138,302,354	138,302,354	0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190,818,552	3,180,054,169	10,764,383
유아및초중등교육	2,966,707,718	2,971,667,913	△4,960,195
평 생 · 직 업 교 육	7,189,678	7,149,678	40,000
교 육 일 반	216,921,156	201,236,578	15,684,578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2. 11
	의 결 일 자	2017. 1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수정 예산안	기제출 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3,192,688,252	3,190,818,552	1,869,700
이 전 수 입	2,960,881,452	2,959,011,752	1,869,700
자 체 수 입	36,172,838	36,172,838	
차 입	57,331,608	57,331,608	
기 타	138,302,354	138,302,354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수정 예산안	기제출 예산안	증 감 액
합 계	3,192,688,252	3,190,818,552	1,869,700
유아및초중등교육	2,967,077,418	2,966,707,718	369,700
평생·직업교육	7,189,678	7,189,678	0
교육일반	218,421,156	216,921,156	1,500,000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3)
	의 결 일 자	(2017. 11. 30) 2017. 12. 11	2017. 12. 4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8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수 입 계 획						
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제료	기타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보조금	공제료				
6,198,375	880,649	1,297,071	100,312	133,492	61,760	3,725,091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운영비	기타지출	예비비	
6,198,375	2,629,775	265,142	57,750	35,114	3,210,594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3)
	의 결 일 자	(2017. 11. 30)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안)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1)	2018년 운용계획					2018년 순조성 (1+2-3)	2018년 최종규모
	수 입(2)				지 출 (3)		
	계	출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747,180	114,000	100,000	0	14,000	300,000	561,180	561,180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2017. 11.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11. 30)	2017. 12. 4
의결일자	2017. 12. 11	심사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결일자	2017. 12. 13	심의결과 원안가결
이송일자	2017. 12. 14	이송기관	교육감
공포일자		공포번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정에 따라 2017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말 현재액 (1)	2017년 운용계획					2017년 순조성 (1+2-3)	2017년 최종규모
		수 입(2)				지 출 (3)		
		계	출연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당초	634,460	112,720	100,000	0	12,720	200,000	547,180	547,180
변경	634,460	112,720	100,000	0	12,720	0	747,180	747,180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4)
	의 결 일 자	(2017. 11. 27)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수정가결)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618,050,961	168,541,529
일반회계	5,127,474,349	153,824,230
특별회계	490,576,612	14,717,298
농어촌주택사업	9,800,000	294,000
의료급여기금	414,626,356	12,438,791
동부권특별회계	30,138,716	904,161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36,011,540	1,080,346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2.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2. 11
	의 결 일 자	2017. 1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8년도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 예산액	기정예산(안)	증 감 액
합계	5,620,721,209	5,618,050,961	2,670,248
일반회계	5,130,144,597	5,127,474,349	2,670,248
특별회계	490,576,612	490,576,612	-
농어촌주택사업	9,800,000	9,800,000	-
의료급여기금	414,626,356	414,626,356	-
동부권특별회계	30,138,716	30,138,716	-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36,011,540	36,011,540	-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4)
	의 결 일 자	(2017. 11. 27)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수정가결)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5,645,035,795	5,467,584,778	177,451,017
일 반 회 계	5,127,766,199	4,987,264,201	140,501,998
특 별 회 계	517,269,596	480,320,577	36,949,019
기 타 특 별 회 계	517,269,596	480,320,577	36,949,019
농 어 촌 주 택 사 업	11,150,044	11,150,044	0
의 료 급 여 기 금	436,727,170	400,231,894	36,495,276
동 부 권 특 별 회 계	30,213,681	30,132,716	80,965
지 역 자 원 시 설 특 별 회 계	39,178,701	38,805,923	372,778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2. 1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2. 11
	의 결 일 자	2017. 12. 11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5,664,082,753	5,645,035,795	19,046,958
일 반 회 계	5,146,813,157	5,127,766,199	19,046,958
특 별 회 계	517,269,596	517,269,596	-
기 타 특 별 회 계	517,269,596	517,269,596	-
농어촌주택사업	11,150,044	11,150,044	-
의료급여기금	436,727,170	436,727,170	-
동 부 권	30,213,681	30,213,681	-
지역자원시설	39,178,701	39,178,701	-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4)
	의 결 일 자	(2017. 11. 27)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최대화 및 운용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8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4개 개별기금	787,155,225 (778,874,436)	35,467,000 (35,467,000)		136,500,000 (136,500,000)	37,403,599 (37,403,599)	41,482,400 (34,479,800)	517,550,147 (517,550,147)		18,344,079 (17,065,890)	408,000 (408,000)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 상환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4개 개별기금	787,155,225 (778,874,436)	20,937,143 (20,937,143)	16,560,000 (16,560,000)				574,959,121 (574,959,121)	152,348,272 (152,348,272)	22,310,689 (14,029,900)	40,000 (40,000)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11.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11. 14)
	의 결 일 자	(2017. 11. 27) 2017. 12. 11	심 사 결 과	2017. 12. 4 (원안가결)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회수 수입 증가 및 용자금 수요(지출) 감소에 따른 운용수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총괄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조성액 (A)	2017년 조성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변경계획(C)	789,695,675 (738,195,675)	328,792,721 (327,233,833)	208,241,525 (199,679,237)	120,551,196 (127,554,596)	910,246,871 (865,750,271)	
당초계획(D)	789,695,675 (738,195,675)	306,224,747 (304,665,859)	225,341,525 (216,779,237)	80,883,222 (87,886,622)	870,578,897 (826,082,297)	
증 감(C-D)	0 (0)	22,567,974 (22,567,974)	△17,100,000 (△17,100,000)	39,667,974 (39,667,974)	39,667,974 (39,667,974)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경감 대책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최영규·장명식·이해숙 김대중 의원 외 3인		제 출 일 자	2017. 11. 2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에너지와 자원을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모들의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계속되고, 각종 필요경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여건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그야말로 정치적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 전라북도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추가 부담료를 낮추거나, 폐기하도록 정부차원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 아울러,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보육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부모들이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추가보육료 경감과 폐지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 확대를 촉구한다.
- 나. 만 0-2세 아이들을 돌보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 다. 보육료를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성일·최인정·최영일 의원 외 15인	제 출 일 자	2017. 12. 11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이·통장의 활동수당이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상태로 있는 등 이·통장의 처우는 열악함.
- 민선 이후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수렴하고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사회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증가로 이·통장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어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이 요구됨.

□ 주요내용

- 가. 이장·통장 연합회 조직에 대한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13년 동안 동결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을 현실화 하고 의료보험지원 확대와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라.
- 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업무이외에 이장·통장을 관행적으로 동원하거나 강제로 할당하는 식의 업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의안번호 126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 출 자	상임위원장		제 출 일 자	2017. 12. 1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전라북도의회홈페이지 참조)

농촌지역 주민 대표성 경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 개선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조병서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12.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중앙집권 정치구조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오래 동안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조장하고, 반대로 농촌과 지방은 변방으로 취급해 왔다. 지방자치의 본격시행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법률과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개편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정수 문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축소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 전라북도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농촌지역 정수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원 조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되길 강력히 촉구하며, 전라북도의회는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가.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1안, 2안 모두 농촌지역 광역의원 숫자를 최대 22명에서 최소 10명 감축시키는 안으로,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 나. 전북지역 의원정수를 줄이는 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수 편차인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다는 점이다.
- 다.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 라. 광역의원정수는 최종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에 피해가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낙후지역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

제 출 자	이학수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12.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그간 각 지방정부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 재정분권계획안이 지역불균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
- 단순히 지방소비세/소득세율 등을 확대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함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재원보장과 재정형평 효과가 최적화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분권 로드맵이 지방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큼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를 위한 재원배분장치와 교부세율 인상 등의 균형발전방안을 확고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함

군산-석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제 출 일 자	2017. 12. 1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12.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12.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연결하는 국제카페리 항로가 2008년에 개설된 이후 중남부지역 유일의 대중국 관문으로 해운물류는 물론이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군산-새만금지역은 서해안 최대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위치해 있고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함께 전북이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과 전국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 군산항 활성화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내년 1월 개최되는 한중해운회담에서 군산항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 이를 조속히 확정지어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함

□ 주요내용

- 가. 군산항의 한중간 물동량과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산-석도간 카페리 운항횟수를 주당 3항차에서 6항차로 조속히 증편해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함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11. 8 ~ 2017. 12. 13)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 타
금 회	4		1							1			1	1
2017년 누 계	26	7	4			2		1	5	4	1		1	1

○ 제출자별

(2017. 11. 8 ~ 2017. 12. 13)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4	4	4				
2017년 누 계	26	26	22	2	1	1	

2. 처리현황

(2017. 11. 8 ~ 2017. 12. 13)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4	4	4				
2017년 누 계	26	26	25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12. 13)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90	90	89	1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3	13	13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9	19	19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2	12	1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9	29	28	1		
	교 육 위 원 회	9	9	9			
	기 타	8	8	8			
금회	소 계	4	4	4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환 경 복 지 위 원 회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		2			
	교 육 위 원 회	1		1			
	기 타	1		1			
누계	소 계	94	94	93	1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3	13	13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9	19	19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2	12	12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31	31	30	1		
	교 육 위 원 회	10	10	10			
	기 타	9	9	9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11. 8 ~ 2017. 12. 13)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90	90		100	
	누 계		464	464		100	
도	금 회		70	70		100	
	누 계		447	447		100	
교육청	금 회		57	57		100	
	누 계		62	62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11. 8 ~ 2017. 12. 13)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 지	산 업 경 제	문 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78							
	누 계		443		107	75	78	60	109	4
도	금 회		70		24	15	15	14	2	
	누 계		374		106	68	89	60	62	4
교육청	금 회		8			4		2	2	
	누 계		69		2	2		2	42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7. 12. 13)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2383	2383		
전라북도	1852	1852		
교 육 청	531	531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7. 12. 1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2788	878	1206	732	616	740	1407	31
전라북도	2254	402	575	343	307	318	300	9
교 육 청	568	37	45	31	13	25	409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12. 1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합 계	9848	1772	842	984	1082	1749	546	347
전라북도	8334	1678	1963	926	1151	1081	1365	170
교 육 청	1514	94	102	67	45	91	1016	99